

[일련번호 : 1]

# 경기도체육회

## 기관경고

[제 목] 국도비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

[소 속 기 관] 파주시체육회

[내 용]

### 1. 업무개요

파주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에서는 「파주시체육회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및 「파주시체육회 회계규정」(이하 “회계규정”이라 한다.)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경기도체육회로부터 국·도비 보조금을 교부받아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체육회 「정관」 제39조(재산의구분), 제40조(재원), 제45조(예산편성 및 결산) 및 「회계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국도비 예산 편성 및 집행을 관리하여야 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체육회의 「정관」에 따르면 재산과 재원을 구분하여 사업을 수행하거나 체육회 운영에 사용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의 지원·보조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고 예산편성 및 결산의 기능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회계규정」에는 회계를 건전하고 공정·타당하게 운영하기 위해 모든 수입과 지출을 표기하도록 되어있다.

체육회는 2021 ~ 2023년도 이사회에서 해당연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시비 예산은 심의·의결을 하였으나 국·도비 예산은 포함하지 않았고, 결산에 대하여만 대의원총회를 통해 심의·의결하였다.

본 처분사항에 대해 경기도체육회에서는 시군체육회 정기종합감사에서 지적한 공통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안내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조 치 사 항] 파주시체육회장은

정기종합감사 결과를 근거로 2024년도 국·도비 보조금 예산(안)을 이사회를 개최하여 심의·의결하여 보조금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4년도 국도비 예산 심의·의결 후 본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

# 경기도체육회

## 주의조치

[제 목] 대의원의 임원(감사) 선임 운영 부적정

[소 속 기 관] 파주시체육회

[내 용]

### 1. 업무개요

파주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는 「파주시체육회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감사’를 선임하였고, 금번 정기감사 수감범위인 2021년부터 2023년 까지 확인결과 2021년부터 2023년 정기총회시까지 파주시레슬링협회 회장(함재☐)이 ‘행정감사’로 선임되어 감사보고 작성 및 보고 등 감사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동 행정감사의 경우 감사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각 총회에 참석하여 참석서명부에 서명하고 의결권을 행사하였으며, 2023년 새로이 선임된 행정감사 2인(박완☐, 김성☐) 또한 대의원으로써 감사에 선임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였으며 이전과 마찬가지로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다.

###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체육회는 「정관」 제26조 제5항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하되, ‘행정감사’의 경우 정회원 단체 대의원 중에서 종목단체 1명과 읍·면·동체육회 1명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 동조 제9항에서는 제10조 제1항에 따라 대의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체육회의 임원이 되는 경우 1개 단체에서 1명만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 「정관」 제10조 제4항에 따라 정회원단체의 장으로 대의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체육회의 임원이 되는 경우로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며, 해당 단체에서

추천한 부회장 1명이 대의원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sup>1)</sup> 이는 변경前 「정관」의 사항을 적용하더라도 정회원단체의 장이 대의원의 자격을 갖으며, 해당인이 임원으로 선임될 경우 그 자격이 상실되고, 해당 단체의 부회장이 대의원으로 구성됨은 동일하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체육회는 정회원단체의 장인 ‘파주시레슬링협회’ 회장(함재 □)을 20\*\*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행정감사’로 선임하였고, 해당인은 20\*\*년 정기총회시 까지 감사보고 등 그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1] ‘21~’23년도 정기대의원총회 감사 보고자<sup>2)</sup>

구분	행정감사	회계감사
2021	함재 □	김영 □
2022	함재 □	김영 □
2023	함재 □	김영 □

‘감사’의 경우 「정관」 제2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임원에 범주에 속해 있으며, 위 관련규정에 따라 파주시레슬링협회 회장 즉, 정회원단체의 장으로 대의원의 자격을 가진자가 임원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그 자격이 상실되어 당시 협회장인 ‘함재 □’의 대의원총회에 대의원으로의 구성 및 총회 참석은 불가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수감 범위인 2021~2023년도 대의원총회 참석서명부를 살펴보면 ‘함재 □’이 참석서명부에 직접 서명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 자격 없는자의 총회 구성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1) 관련규정은 2022년도 한차례 개정이 이루어졌음. 개정전 사항으로 ‘행정감사’의 경우 정회원단체중 회원종목단체 대표인 대의원중에서 1명을 선임하며(개정前 정관 제27조(임원의 선임) 제5항), 대의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체육회의 임원이 되는 경우 1개 단체에서 1명만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음(동조 제9항). 또한 제11조(총회의 구성) 제4항에 따라 정회원단체의 장으로 대의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임원이 되는 경우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며, 해당 단체에서 추천한 부회장 1명이 대의원이 된다고 규정한 바 있다.

2) 출처 : 2021~2023년도 「정기대의원총회 감사보고서」

또한, 이와 같은 근거 및 사유로 20\*\*.\*.\*\*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 하면서 「정관」 제26조 제5항에 근거하여 체육회 행정감사 2인(박완☐-종목 단체장, 김성☐-읍면동체육회장)을 새로이 선임하였는데, 이후 개최한 제1차 임시대의원총회(20\*\*.\*.\*\*), 제2차 임시대의원총회(20\*\*.\*.\*\*의 참석서명부를 살펴보면 동일 2인의 참석대상 및 서명이 확인되었다.

이 또한 파주시레슬링협회 회장의 임원선임 사안과 동일한 근거로 해당 종목단체와 읍면동체육회 부회장 각 1인을 추천받아 대의원으로 선임하고 구성하였어야 함에도 대의원의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여 참석 및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 해당 규정에 위배한 총회 구성 및 운영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 [조 치 사 항] 파주시체육회 회장은

「정관」에서 정한 대의원의 임원선임 관련 규정 및 現 대의원 구성의 재검토를 통해 자격이 상실된 자의 총회 구성 및 의결권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본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

# 경기도체육회

## 주의조치

[제 목] 상임이사회 운영 부적정

[소 속 기 관] 파주시체육회

[내 용]

### 1. 업무개요

파주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는 이사회와는 별도로 회장, 부회장, 이사 등으로 구성된 ‘상임이사회’를 운영중에 있으며, 2022.\*.\* 「2022년 제2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하여 총 5건의 보고사항 및 심의사항을 의결하였다. 그 중 ‘신임이사 선임(안)의 건’을 동 상임이사회에서 부의안건으로 상정하여 신임이사 1명에 대한 선임(안)을 의결하였고, 체육회 임원으로 등기하여 현재 체육회 임원으로 활동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체육회는 「파주시체육회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2조의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여 파주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및 복지향상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4조에서 정한 각종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정관」 제22조에 따라 회장, 부회장, 이사 등 체육회 ‘임원’을 구성하여 운영중이다.

‘임원’의 경우 「정관」 제11조 제4호 및 제26조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 및 해임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사람중에서 선임하며, 다만, 총회의 의결로 선임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동조 제1항에 따라 차기 총회에서 선임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임 받은 이후

첫 번째 이사회 개최 직전까지 그 권한의 기한을 동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체육회는 ‘임원’을 선임하는데 있어, 「정관」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하여야 하며, 회장 위임시 차기 총회 보고 및 선임 권한의 유효기간을 검토하여 선임하는 것이 타당하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체육회는 「이사회 운영규정」을 20\*\*년 \*월 제정하여 ‘상임이사회’의 운영 관련 근거를 마련하였고, 동 규정 제5조(상임이사회 운영) 제1항에 상임이사회 심의의결사항을 정하였다. 즉 이사회에서 위임을 받은 사항, 회장이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기타 이사회 관련된 행사 등이 그 주요안건으로 명시되어 있다.

체육회는 20\*\*.\*\*.\*. 「20\*\* 제\*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하였고, 총 5건의 부의안건을 다루면서 신임이사 1명(※ 대상 : 이인☐)에 대한 선임(안)을 의결하였다.

‘임원’의 선임은 체육회 「정관」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하여야 하며, 회장에게 선임권한을 위임하더라도 차기 총회 보고 및 선임권한의 유효기간내 선임되었어야 하나, 동 절차에 대한 이행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회의록 및 관련 자료 증빙 없음.)

더불어 「이사회 운영규정」 제5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상임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에도 임원의 선임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동 규정에 적용 여부를 검토하더라도 이사회에서 위임받거나 신임이사 선임사항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거나 하는 사정도 인정하기 힘들다.

따라서, 「20\*\*년 제\*차 상임이사회」에서 신임이사(이인☐)에 대한 선임을 의결한 사항의 경우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임원의 선임 절차가 위배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조 치 사 항] 파주시체육회 회장은**

향후 임원선임시 「정관」에서 정한 선임 절차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이행되도록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20\*\*년 상임이사회에서 선임한 신입 이사(이인☐)의 경우 「정관」에서 규정한 절차를 위배하여 선임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해당인의 재선임에 대한 절차를 거치는 등 조치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본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4]

# 경기도체육회

## 주의조치

[제 목] 정관 및 제규정 개정 미흡 등 운영 부적정

[소 속 기 관] 파주시체육회

[내 용]

### 1. 업무개요

파주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는 「파주시체육회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을 개정하기 위하여 20\*\*년도 제\*차 이사회(20\*\*.\*\*.\*\*)를 개최하여 「정관」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고, 경기도체육회에 검토를 거쳐 파주시체육회 제2차 임시대의원총회(20\*\*.\*\*.\*\*)를 개최, 해당 「정관」 개정(안)을 의결 한 후 파주시장의 승인을 득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다.

###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체육회 「정관」 제51조에서는 그 제·개정의 절차를 정하고 있는데, 「정관」 변경시 동조 제2항에 따라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 또는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 후 경기도체육회에 보고하고 통보받은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대의원총회 출석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파주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체육회는 「정관」을 변경하기 위하여 관련 절차 이행을 위하여 20\*\*.\*\*.\*\*. 제\*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파주시체육회 정관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고, 경기도체육회의 검토를 위하여 20\*\*.\*\*.\*\*. 검토 요청 후 20\*\*.\*\*.\*\*. 검토의견을 회신 받았다. 이후 「정관」 2023.7.21. 제2차 임시대의원총

회를 개최하여 동 사항을 다루고 파주시장의 승인을 받기 위해 20\*\*.\*\*.\*\* 「정관」 승인에 대한 요청을 한 것이 확인되었으나, 이후 현재까지 약 1년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파주시로부터의 정관에 승인에 대한 사항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2024년 4월에 시군체육회 규정이 개정되었음을 안내 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은 채 규정승인이 지연되었다.

이와 같은 사항은 향후 체육회 정관과 본회 및 대한체육회 관련 규정과 상이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법적 쟁송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조속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체육회 운영에 필요한 파주시종목단체 규정(20.10.05), 읍면동 체육회규정(21.11.24), 회계규정(17.02.17), 문서관리규정(17.02.17) 등 다수의 제규정 제정 후 개정없이 장기간 경과되어(1~7년 경과) 현 체육회 운영 및 각 상황에 적시대응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 [조 치 사 항] 파주시체육회 회장은

약 1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해당 지방자치단체(파주시장)의 승인이 이루어지지 문제점을 검토하시어, 조속한 「정관」개정(안)의 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체육회를 체계적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돕는 제규정을 전면 재검토하여 제·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결과를 본회 공정감사실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5]

# 경기도체육회

## 주의조치

[제 목] 국·도비 보조금 계약·회계처리 부적정

[소 속 기 관] 파주시체육회

[내 용]

### 1. 업무개요

파주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는 국도비를 비롯한 모든 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는 의사결정을 시작으로 원인행위를 결정하고 지출 할 때 적법한 절차와 증빙을 근거로 회계를 처리하고 관리해야 한다.

###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체육회는 보조금 집행 및 관리에 있어 「회계규정」(이하 “회계규정”이라 한다.) 제12조(예산운영의 기본원칙), 제28조(지출원인 행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sup>3)</sup>, 제32조(세금계산서 등)<sup>4)</sup>,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1조(지방보조금 사용 방법)<sup>5)</sup> 등에 의거 보조금 집행 및 관리가

3) 「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⑧ “생략”

5) 「보조금 관리기준」 제11조(지방보조금 사용 방법) ① “생략”

② 지방보조금 지출거래 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⑥ “생략”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공사·물품·용역이 필요할 시에는 관련 법률을 확인하여 절차에 맞게 계약이 이루어져야 하며, 계약행위는 「지방계약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체육회는 국·도비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회계관리를 해야 하나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견되었다.

#### 가. 경기도체육진흥공모 보조금 집행 부적정

2022년도 \*\*\*\*에 선정받아 종목단체를 대상으로 대회를 개최하며 [표 1]과 같이 단체복을 구매하면서 개인 포인트를 적립하고 이를 결과보고에 첨부 되어있는 영수증을 통해 확인하였다.

**[표1] 보조금 집행 부적정 현황**

순	사업명	지출내역	업체명	금액	지적사항
1	2022 *****	단체복	블*****	*,***,000	개인포인트 적립

또한 2023년도 \*\*\*\*(유형1)에 선정되어 동호인 축구대회를 개최하면서 파주시축구협회(이하 “축구협회”라 한다.)는 파주시체육회 보조금 통장에 교부받아 전용카드를 사용하여 보조금을 집행하였다.

심판 등 식비를 지출하면서 대회장이 위치한 금촌지역에서 식비를 지출하지 않고 [표2]와 같이 문산지역으로 이동하여 식비를 지출하였고 이를 본회는 정산보고 과정에서 일부 불인정되어 반납하였다.

**[표2] 축구대회 보조금 집행 부적정 현황**

순	사업명	지출내역	업체명	금액	지적사항	불인정 여부
1	2023 ****	식비	문****	***,000	타지역 지출	○
2	2023 ****	식비	푸****	***,000	타지역 지출	○ (일부)
3	2023 ****	식비	수****	***,450	타지역 지출	X

**나. 분할구매 등 보조금 회계처리 부적정**

체육회는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제규정을 확인하고 적법한 절차와 근거를 바탕으로 보조금을 집행해야 하나 [표3]과 같이 회계처리 및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표3] 분할구매 등 계약서 미작성 현황**

순	사업명	지출내역	금액	업체명	지적사항
1	2023 ****	탁구용품	*,***,000	혜****	분할구매
2	2023 ****	탁구공 등	***,800	혜****	분할구매
3	2023 **** *	운동용품	*,***,000	우****	분할구매
4	2023 **** *	운동용품	*,***,000	우****	분할구매
5	2021 **** **	방역용품	***,000	튼****	분할구매
6	2021 **** **	방역용품	*,***,000	튼****	분할구매
7	2021 **** **	방역용품	***,000	튼****	분할구매
8	2021 **** **	방역용품	***,000	튼****	분할구매
9	2023 **** ***	응급키트	***,000	튼****	분할구매
10	2023 **** ***	응급키트	*,***,000	튼****	분할구매, 계약서 미작성
11	2023 **** ****	탁구용품	*,***,000	제****	계약서 미작성

체육회는 보조금을 통해 체육용품, 방역용품 등을 업체를 통해 구매하면서 단가를 비교하기 위해 [표4]와 같이 비교견적을 첨부하였고 이를 확인해 본 결과 ‘\*\*\*\*\*’ 업체를 통해 비교견적을 첨부하였으나, 동 업체는 2013.06.30.자로 폐업신고가 된 업체이며, 체육회는 이를 확인하지 않고 폐업한 업체의 비교견적을 첨부하였다.

**[표4] 비교견적 폐업업체 현황**

순	사업명	지출 내역	금액	업체명	지적사항
1	2023 *****	응급키트	*,***,000	튼*****	비교견적 폐업업체
2	2023 *****	응급키트	***,000	튼*****	비교견적 폐업업체
3	2023 ***** *	트로피	***,000	튼*****	비교견적 폐업업체
4	2023 ***** *	운동용품	*,***,000	튼*****	비교견적 폐업업체
5	2022 ***** **	운동용품	*,***,000	튼*****	비교견적 폐업업체
6	2022 ***** **	운동용품	***,000	튼*****	비교견적 폐업업체
7	2021 ***** **	운동용품	*,***,000	튼*****	비교견적 폐업업체

또한 대회 및 행사를 개최하면서 스포츠안전재단을 주로 이용하여 주최자배상보험을 [표5]와 같이 계좌이체를 통해 가입하고 있으며 보험가입은 보험가입증으로 보험가입여부 및 회계증빙을 실시하고 있으나 스포츠안전재단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단체로 체육회는 특정 사업에서 스포츠안전재단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회계증빙하기도 하였으나 일부사업에서 보험가입증으로만 지출증빙하였다.

**[표5]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 현황**

순	사업명	지출 내역	금액	업체명	지적사항
1	2023 *****	보험비	***,000	스포츠안전재단	전자세금계산서
2	2023 ***** *	보험비	*,***,000	스포츠안전재단	전자세금계산서
3	2023 ***** *	보험비	***,550	스포츠안전재단	전자세금계산서

순	사업명	지출 내역	금액	업체명	지적사항
4	2022 ***** **	보험비	***,400	스포츠안전재단	전자세금계산서
5	2022 ***** **	보험비	***,950	스포츠안전재단	전자세금계산서
6	2022 ***** **	보험비	***,100	스포츠안전재단	전자세금계산서

**[조 치 사 항] 파주시체육회 회장은**

보조금 관련 법령 및 체육회 회계규정 등을 근거로 체계적이고 청렴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집행·관리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1회성 교육이 아닌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2021년도 ~ 2023년도 국도비 보조금 정산 서류를 본회 사업부서에 보충하기 바라며, 체육회 보조금 회계기준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6]

# 경기도체육회

## 개선조치

[제 목] 문서관리운영 부적정

[소 속 기 관] 파주시체육회

[내 용]

### 1. 업무개요

파주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는 「문서관리 규정」에 따라 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규정된 양식에 의해 작성을 원칙으로 하고 문서의 구성, 분류기호와 문서번호 등을 규정에 정한대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체육회는 「문서관리 규정」 제12조(문서의 구성), 제13조(분류기호와 문서번호)에 따라 문서를 구성하고 일련번호를 주관부서별 분류하고 기호 및 문서번호를 결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체육회는 경기도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 파주시청(이하 “파주시”라 한다.), 파주시종목단체 또는 읍면동체육회(이하 “회원단체”라 한다.) 등 다양한 기관에 공문을 수발신 하고 있다.

문서번호를 이중으로 생성하여 ‘파체-000’ 또는 ‘부서명-000’을 사용하고 있고 수발신대장과 같이 문서번호를 관리하는 서류를 찾아 볼 수 없었다.

또한 체육회는 문서발송시스템을 본회로는 ‘경기도체육회 전자문서 시스템’, 파주시에는 ‘문서24’, 회원단체에는 메일 등으로 수발신을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체육회는 연도별 기록물의 일련 문서번호를 기관별로 이중으로 부여하여 문서관리의 식별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며, 또한 모든 기록물을 전자적 관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서발송 시 각각 다른 문서 시스템 사용과 수기작성으로 기록물 관리의 시스템이나 프로세스를 동일하게 운영하지 못하였다.

#### [조 치 사 항] 파주시체육회 회장은

기록물 관리에 대한 지적사항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문서관리 방안 마련과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하여 주시고 본회에서 운영하는 전자문서시스템을 사용하거나 파주시에서 운영하는 전자문서시스템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기록물 관리를 철저하게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7]

# 경기도체육회

## 권고조치

[제 목] 공직유관단체 미등록 및 이해충돌방지제도 미운영

[소 속 기 관] 파주시체육회

[내 용]

### 1. 업무개요

파주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지방체육회)를 근거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으며 파주시,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체육회 등 보조금을 지원받아 파주시민의 건강증진과 체육진흥을 위해 활동하는 공공성을 지닌 법정법인단체이다.

###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의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규모, 임원의 선임 방법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등을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으며,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는 범위는 「동법 시행령」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의 범위 등)제1항제3호에 의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10억원 이상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등으로 명시되어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기관·단체가 공직유관단체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되어있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체육회는 [표1]과 같이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연간 10억원 이상 보조를 받는 단체이지만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지정 및 인사혁신처장이 고시하는 공직유관단체로서 지위를 갖고 있지 않다.

**[표1] 파주시체육회 결산현황(2021~2023년)**

(단위:천원)

재 원 별	2023년 결산	2022년 결산	2021년 결산
국비	***,655	***,495	***,282
도비	***,050	***,700	***,327
도교육청	***,701	** ,838	** ,502
시비	***,235	***,307	***,239

※파주시체육회 정기종합감사 수감자료 결산 현황 재구성

이에 따라 체육회는 공직자가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 [조 치 사 항] 파주시체육회장은

기관의 공정성과 공공성 담보를 위해 주무관청인 파주시청 체육담당 부서 등과 업무연찬을 통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지정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지정 이후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과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 등을 참고하여 기관에 맞는 이해충돌 방지제도 및 임직원 행동강령을 수립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8]

# 경기도체육회

## 권고조치

[제 목] 위원회 구성 자격기준 개선

[소 속 기 관] 파주시체육회

[내 용]

### 1. 업무개요

파주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는 「파주시체육회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37조에 근거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관련 운영 규정인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이하 “위원회 규정”이라 한다.)을 20\*\*년 제정하여 3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체육회는 20\*\*.\*\*.\*\*. 제1차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위원회 위원을 구성한 바 있다.

###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체육회는 「정관」 제3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설치된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하기 위해 동조 제2항과 체육회 「위원회 규정」 제4조 제3항에 명시한 위원의 자격기준에 부합한 인사들로 위원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체육회 ‘위원회’ 위원을 구성하기 위하여서는 관련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자격기준에 부합한 인사들로 구성하여야 하며, 그 구성자격은 체육회 「정관」 및 별도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제정한 「위원회 규정」이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어느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동일한 자격기준으로서 위원이 선임되어야 함이 타당하나, 현재 다소 상충되는 위원 자격기준이 관련규정에 명시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1] 체육회 「정관」 및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상 위원자격**

「정관」 제37조 제2항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제4조 제3항
법학자, 법조인 등 법률업무종사자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이상 종사한 사람
스포츠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스포츠 또는 법률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스포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좌동
인권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인권전문가로서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는 위원회 위원 선임시 서로 상충되는 자격조건으로 인한 혼란 초래 및 의결사항에 대한 절차상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으로 향후 자격조건 등에 대한 각 규정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조치사항] 파주시체육회 회장은**

위원 자격기준에 대한 절차상 하자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관성 있는 위원 선임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 등 개선하여 주시고, 조치결과를 본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9]

# 경기도체육회

## 권고조치

[제 목] 국·도비 보조금 사업계획 및 결과보고 부실

[소 속 기 관] 파주시체육회

[내 용]

### 1. 업무개요

파주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는 경기도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를 통해 국도비 보조금을 받아 보조사업자로 보조사업을 수행할 경우 공모신청서나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수행한다.

###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파주시체육회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관계 법령, 사업별 사업지침 등에 따라 보조사업자로서 보조사업을 건전하고 청렴하게 수행해야 하며 객관적인 증빙을 근거로 보조금을 집행하고 관리해야 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체육회는 초등스포츠클럽, 신나는주말생활체육학교, 경기도체육진흥 공모 등 사업을 보조사업자로 수행하면서 사업(공모)신청서, 결과보고 등을 제출할 때 대표자의 날인을 확인하여 관련 서류의 공인을 하는 일련의 과정을 수행하지 않고 제출하고 기록물 관리를 하고 있다.

#### [조치사항] 파주시체육회 회장은

국·도비 보조사업자가 되기 위해 제출되는 신청서 및 결과보고에서 대표자의 날인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